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신상태 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,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문구·용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 중 “신고하지 않거나”를 “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”으로, “신고한”을 “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한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바목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<u>법 제6</u> <u>조제1항제3호</u> 에 따라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<u>법 제6</u> <u>조제1항제4호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 유효기간은 <u>1년</u> 으로 한 다. 다만, 법 제20조에 따른 장 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 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8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) ①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97